

## 요약

# 예비문화지구 도입해 다양한 지역 포용 문화지역별 생태여건 맞는 맞춤형 지원

## 문화지구제도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도입... 현재 5곳 지정

문화지구 제도는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도입시행되었다. 현재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서울 2곳을 포함하여 5개 지역이다. 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높지 않다. 그 결과, 인천 개항장지역과 제주 예술인 마을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2010년 이후, 새롭게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다. 다양한 문화지역이 부상하고, 여러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지구 도입보다는 문화밀집지역이나 특화지역 등과 같은 다른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이점이 상실된 것이다.

[표 1] 문화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지정 연도	행정 구역	밀집자원	지정목적	면적
서울 인사동	2002	서울 특별시	전통문화	전통문화업소의 보존 및 육성	175,743㎡
서울 대학로	2004	서울 특별시	공연예술문화	(소)공연장 보호 및 육성	446,569㎡
파주 헤이리	2009	경기도 파주시	다양한 전시, 창작, 예술건축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보존육 성·활성화	505,891㎡
인천 개항장	2010	인천 광역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	근대 역사 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역 활성화	537,114㎡
제주 저지예술인 마을	2010	제주 특별자치도	입주예술인, 다양한 문화활동	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 문화예술거점으로 육성	325,100㎡

## 문화지구제도, 인사동에 맞춰 설계... 다른 지역에 적용 어려워 '큰 문제'

문화지구 제도는 인사동을 모델로 개발되었다. 인사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1990년대 중후반, 지나친 활성화로 인사동이 상업화와 지역개발에 몸살을 앓자 서울시는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지역 내 '영빈가든' 건물의 개발이다. '영빈가든' 개발로 건물 내 열두 개의 전통문화업소가 사라질 위기에 빠지자, 지역 내에서는 이들 열두 가게를 보전하자는 운동이 펼쳐졌고,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건물주에게는 전통문화업소 보전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업소 운영자들에게는 운영지원을 시행하며, 지역환경 관리를 통해 인사동을 문화지역답게 관리해보자는 것이 도입취지다.

그 결과 인사동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건물주에게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건물의 신축 및 개축, 대수선비에 대한 용자지원이 주어졌고, 운영자에게는 시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용자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 시설이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운영자가 입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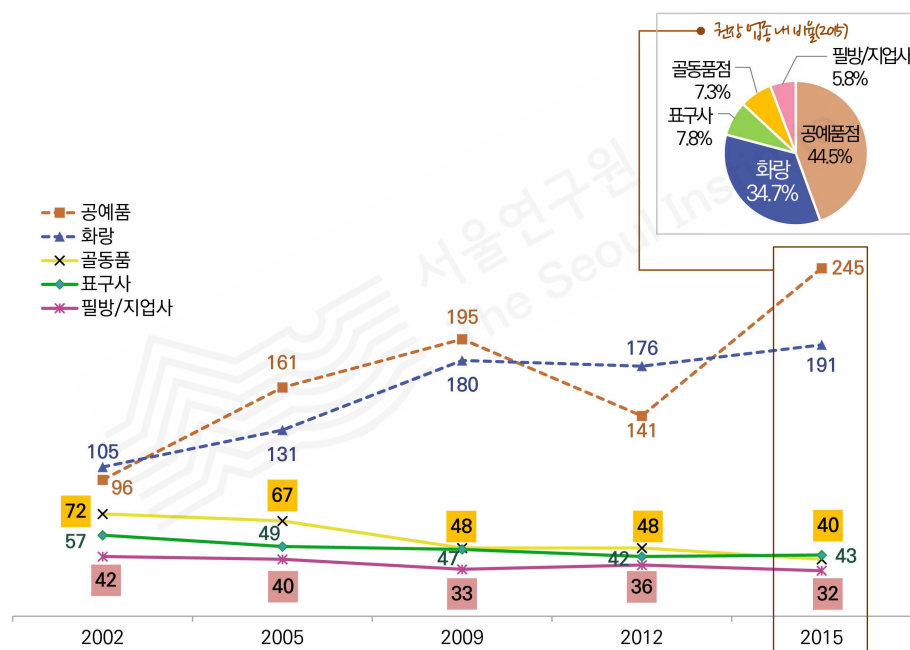
[표 2] 건물주 중심의 문화지구 지원체계

지원항목	지원대상	건물주	운영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용자지원	규모	1억 원 한도 신개축 대수선비	1억 원 한도 시설비와 운영비
	조건	연리 3%,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그대로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원 가능성을 개방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춰 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인사동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도를 법제화해 법의 구조가 경직되었고,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가 되었다. 같은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는 지역 내 용자건수가 문화지구로 관리된 2006년 이래 12건에 불과한 상태다. 같은 기간 인사동에 무려 194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인사동 외 다른 지역에 얼마나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인지 알 수 있다.

## 지역별 운영성과 기대 미달... 상업적 화랑·공예품점·중대형 공연장 급증

문화지구별 운영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우선, 지구별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권장시설은 외형상으로는 크게 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그 생태가 변했다. 인사동은 권장시설의 총수가 2002년 327개에서 2015년 551개소로 48.1% 증가했으나, 권장시설 내부에서 인사동의 전통을 구성했던 고미술관련 업종(골동품점, 필방 및 지업사, 표구사 등) 수는 크게 줄어, 2002년 171개소에서 2015년 115개로 53% 감소했다. 반면 화랑 및 공예품점은 각각 81.9%와 155.2% 상승했다. 지역이 좀 더 상업적인 화랑과 공예품점에 자리를 내준 것이다.



자료: 서울시, 2016,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p.52.

[그림 1]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업종 세부 현황

대학로 또한 마찬가지다. 권장시설인 공연장 총수는 2004년 57개소에서 2015년 166개소로 무려 191.2%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다. 이 시기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4개소에서 총 16개소로 증가하였다. 단 한 개만 늘어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형의 공연장이 무려 300.0%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학로는 상업적인 공연의 장이 되었다. 과거와 같은 극단형 공연이 아니라, 상업을 매개로 한 공연이 주류를 차지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

[표 3] 대학로 내 공연장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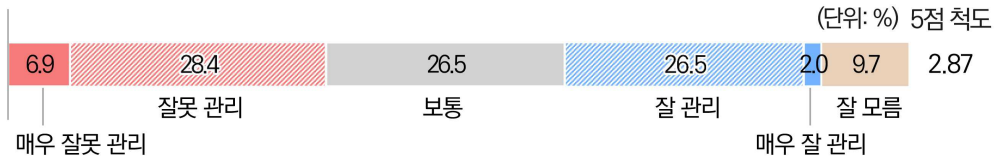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0석 미만	18	31.6	26	23.9	31	21.4	33	20.0
100~199석	29	50.9	59	54.1	77	53.1	88	53.0
200~299석	6	10.5	14	12.8	25	17.2	29	17.4
300~399석	4	7.0	6	5.5	7	4.8	6	3.6
400~499석			3	2.8	3	2.1	3	1.8
500석 이상			1	0.9	2	1.4	7	4.2
총계	57	100.0	109	100.0	145	100.0	166	100.0

자료: 서울시, 2016, 「2015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p.162 재인용

## 인사동 대학로 상인, 임대료 인상 등의 이유로 지구지정 만족도 낮아

문화지구 제도는 이처럼 성공적이지 못한 성과를 거뒀으며, 상인 및 전문가 모두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인사동 상인들은 문화지구 관리운영에 대한 만족도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8.5%에 불과했다. 대신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35.3%를 차지, 2.87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대학의 상인들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문화지구 관리운영이 지정목적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20.0%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41.4%의 응답자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해, 전체적인 만족도는 2.70에 불과했다. 그만큼 만족도가 낮다는 뜻이다.



자료: 서울시, 2016,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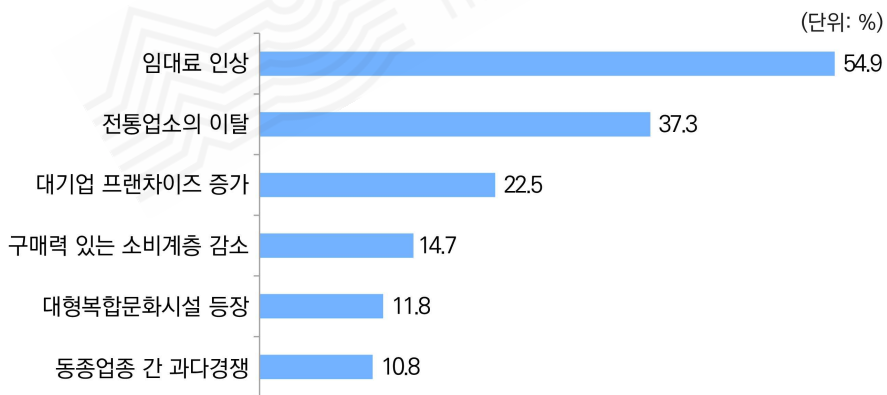
[그림 2]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만족도에 관한 상인설문조사



자료: 서울시, 2016,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p.23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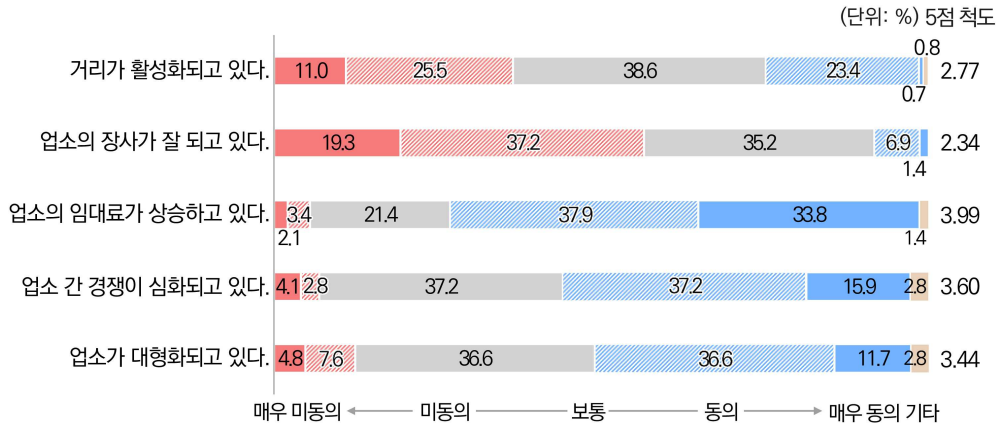
[그림 3]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목적 부합도에 관한 상인설문조사

만족도가 낮은 주요 이유는 임대료 인상 때문이다. 인사동과 대학로 상인 모두 임대료 인상을 지역사회 내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어 전통업소의 이탈과 상업적 전환이 지적되었다. 인사동 상인들은 전통업소 이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증가를 지역사회의 큰 변화로 지적했으며, 대학로 상인들 또한 업소 간 경쟁 심화와 대형화 등을 주요한 변화로 꼽았다.



자료: 서울시, 2016,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p.129.

[그림 4]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후 발생한 문제점에 관한 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2015)



자료: 서울시, 2016,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p.228. 재인용

[그림 5] 대학로 현황에 대한 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2014)

문화지구 지정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겉으로는 지역을 성장시켰지만, 내부적으로는 업종 내 상업적 분화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과 같은 위험요소를 키워왔다. 초기 인사동에는 적합한 제도일지 모르나,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난 현실에서 더 이상 문화지구 제도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문화지구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 전문가 “제도 개선방향은 지역안정화... 문화지구 새 지역으로 확장해야”

문화지구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결과,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은 ‘지역활성화가 아닌 안정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기반의 생태보전에 주력’하고,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순환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다. 또한 완성된 지역이 아닌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지구를 확장해 문화지구 제도가 보다 다양한 지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문화지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통상적인 관리·운영보다 전략적인 관리·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매년 관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년 단위로 시행하는 모니터링의 성격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한편,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및 여러 층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대응방안을 제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논의되었다. 지역자산화 같은 새로운 흐름이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 거버넌스 체계 형성 및 협동조합 같은 지역법인을 설립하여 지역 내 발생하는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된 (가칭)문화지구지원센터 같은 지원 조직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처럼 중간지원 조직을 형성해 지원을 간접화·전문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지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지역으로 문화지구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제도 개선방향은 △ 지역의 활성화가 아닌, 안정화를 기본방향으로, △ 현재의 문화지구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지역이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 관리 체계를 좀 더 고도화해 관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민간활동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시설중심의 관리와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사람과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순환하는 선순환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을 보호·육성하자는 것이 새로운 제안이다.

## 문화지구의 성장단계에 맞춘 관리체계 유형화 등 새 제도 도입 필요

문화지구 제도 운영을 시설관리 중심에서 사람 및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 문화지구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새로운 문화지역으로 문화지구 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운영방식, 지원체계, 평가와 환류, 거버넌스 등 모든 시스템 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각 분야의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지구 지정은 다양한 지역이 문화지구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문화지역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지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 문화지구’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비 문화지구’란 아직 문화지구로 본격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로 더욱 다양한 지역들의 문화지구로서 가능성을 엿보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문화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사도지사 중심의 지정이 아닌, 자치구 중심의 지정이나 관라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자치구 스스로 문화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다 다양한 지역에 문화지구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지구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의 분화가 요구된다. 현재 문화지구 관리운영은 인사동을 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성숙된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즉, 문화기반의 생태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장 속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지역을 문화지구로 관리하겠다는 서울시의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에서 보듯, 문화지구제도는 각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다양하게 유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문화지구 체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관리체계의 관리운영 방향이 시설 보호 중심으로 구성된 결과, 문화지구 제도는 각 시설 및 용도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리운영체계에서 벗어나, 문화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 및 활동을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지구 제도 내 지원은 지역 내 주민활동의 지원, 지역 자산의 보호·육성, 문화업소의 유지 및 운영 보호 등의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지구를 관리하는 관리체계도 변해야 한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사도지사가 지정하고, 각 자치구가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사도지사 평가를 시행하나 달라진 것은 없다. 지역 내에 있는 핵심 콘텐츠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역환경을 정비하는 것이고,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관리체계 전반의 수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방향은 각 지역의 관리운영을 자치구에 일임하지 말고, 정부와 더불어 서울시가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별 콘텐츠의 생태를 둘러싼 여러 정책적·제도적 문제를 수렴해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각 지역의 콘텐츠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편, 관리체계는 전략적인 관리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1년 단위 통상적 지원보다는 미션을 중심으로 한 1~3년 단위의 전략적 지원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매 3년 단위 사도지사 평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개편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곧, 지역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각 항목별 문화지구 제도 개선방안

개선항목	개선방향	개선방안
지정체계	보다 다양한 지원이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변경	예비문화지구 제도 도입
	자치구의 자발적 동기 부여	자치구 대상 공모사업 추진 행정상 인센티브 제공
관리운영	각 지역별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체계 다양화	시설중심에서 활동 및 생태중심으로 전환 각 성장단계에 맞춘 관리체계 유형화
지원체계	시설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전환	사람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자산화 및 문화업소 보호사업 추진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 선순환시스템 운영 지원
관리체계	협력적 관리체계 개발·운영	정책협의 플랫폼 형성
	전략적 사업체계로의 전환	1~3년 단위 전략적 지원사업 추진 3년 단위 평가 후 관리계획 변경

## 2002년 제정된 현 조례, 지정목적·관리계획 틀 등 전면 개정 불가피

개선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 조례는 2002년 제정 당시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만큼, 조례 전반에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제1조의 목적은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를 ‘문화적인 지역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인사동 중심의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식에서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보전하는 조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권장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 문화지구 제도 혁신을 위하여 2목의 권장시설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3의 주민협의체 내용도 주민협의체 내용 속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으며, 4의 전통문화상품인증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

대신, ‘예비문화지구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삽입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필요하다.

셋째, 제3조 관리계획은 그 내용을 대폭 변화시켜야 한다. 우선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계획의 체계를 바꾸어야 하며, 새로운 유형의 활동 및 제도들을 담아낼 수 있는 틀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에 제3조제1항의 관리계획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문화지구 지정 목적 및 목표, 2. 당해 문화지구에서 중점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할 자원 및 세부적인 실행방안, 3. 문화적인 지역환경 관리 및 조성방안, 4. 문화지구 관리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의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어, 제4항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및 평가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평가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문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법안이 제시한 바와 같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넣어 각 문화지구 운영에 따른 자치구들의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제5조 문화지구 지원은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민의 활동과 실질적인 문화자원(지역콘텐츠)을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주민활동 지원 및 문화자원 보호·육성에 해당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

제1항은 문화지구 내 지역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과 구청장은 문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주민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세부적인 지원항목을 넣지 않는 것은 지원내용을 구체화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주민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2조의 정의에 명기하고, 여기서는 주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자원 보전 및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제2항을 좀 더 엄밀하게 개선해야 한다. 권장시설은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관련 업종 및 시설, 용도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권장'이란 표현을 쓰되 시설보다는 '용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방식은 운영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은 그대로 살려두어야 한다.

다섯째,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은 현 법 규정이 그대로 있는 한, 지금의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2항의 내용 중 인사동 문화지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인사동만이 아닌, 전 지역에 활용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지용도에 대

한 관리에서 벗어나 보호해야 할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의도적 규제나 관리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생태가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하여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정업종이나 용도의 금지가 아닌 지역생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인사동에 뿌리 둔 지역문화진흥법 바꾸고 고차원 정책플랫폼도 구성

「지역문화진흥법」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이 인사동에 뿌리를 두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 또한 그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지구 지정 대상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더불어 법안이 이전되면서, 지정 대상의 2와 3은 변경되었으나, 1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1. ‘문화시설 및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 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3항 영업 및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은 삭제하거나, ‘문화지구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구마다 필요한 업종 및 용도, 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지원의 항목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행령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 2년 단위로 집행상황을 점검, 확인하기로 되어 있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은 현실에 맞게 1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제20조의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도 ‘3년마다 그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한다. 문화지구 지원 및 관리는 지역의 자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 관리체계의 내용은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법에는 반드시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서울시 등 시도지사의 역할이 표기되어야 한다. 즉, 문화지구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지역별로 존재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차원의 정책플랫폼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인사동과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지구 제도는 현 문화지구 관리를 위해서도, 지금 여러 곳에서 생성 및 소멸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지역 관리를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문화지역별 생태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각 사도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기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수한 문화지구에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문화지구 제도를 혁신해야 늘 새롭게 변화하는 문화지역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제도가 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